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윤유진* · 이현아**

〈요 약〉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승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 차이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가업승계 후 이러한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승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가업승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과 승계 전·후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은 가업승계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이익조정과 무관하며, 예측했던 바와 같이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높아진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가업승계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유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부동산 보유비중, 가업승계, 가업승계지원제도, 조세회피, 이익조정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세무사, yoonyou@hanmail.net, 주저자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halee@gachon.ac.kr, 교신저자

I. 서 론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차세대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세청 2021).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를 겪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이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에 축적된 기술 및 경영방법을 지속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세정일보 202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미만(제조업 외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76.2%가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가업승계가 중요하며, 업력이 더 커질수록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은(70.3%)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속세 등의 막대한 조세부담(94.5%)이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20). 따라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세제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까지 상속을 공제하여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이 높고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가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법인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은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경영자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순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되다가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가업승계 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회

피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가업승계 후 이러한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승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외감법인 중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연도 60개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승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가업승계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승계 전에 비하여 승계 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이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가업승계 후에는 이러한 조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계와 실무에 의미하는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 가업승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가업승계기업의 특성이나 문헌연구를 통한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 중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적용받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로 인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은 납세의 무 이행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유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업승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정책입안자, 과세당국, 투자자 및 재무정보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가업승계제도 관련 규정을 정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행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지원세제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

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가업승계기업이므로 이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 등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영위한 일정한 요건¹⁾을 충족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²⁾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용대상, 공제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은 <표 1>과 같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은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 건	내 용
가업 요건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³⁾.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1)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2)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은 200억원, 20년이상 30년미만은 300억원, 30년이상 이면 500억원 한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표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계속)

요 건	내 용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별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⁴⁾.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다만,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 ④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i) 매년도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충급여액이 다음 ㉠ 및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충급여액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연도의 충급여액의 평균(기준충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ii) 사후관리기간(7년간) 전체 평균 근로자수 및 기준충급여액이 다음 ㉢ 및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충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충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2. 선행연구

최근 세대교체를 앞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가업승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가업승계기업의 성과를 살펴보거나(이현재 2009 ; 박권수와 홍기용 2013 ; 김선화와 남영호 2013), 가업승계의 필요성 및 세법 측면에서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박종수 2009 ; 김완일 2010 ; 안숙찬 2013 ; 양재영과 김갑순 2017).

이현재(2009)는 가업승계 후 기업의 공격적 경영전략으로 인하여 수익성은 개선되며, 기업의 업력,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유형자산 증가율에 따라 고용증가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권수와 홍기용(2013)은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가업승계세제에 대해 기업특성(규모, 업종, 후계자, 고용유지 중 특히 규모, 업종)을 반영하여 가업승계세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선화와 남영호(2013)는 중소기업 후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현 경영자요인과 후계자요인, 후계자의 자발적 승계의지 및 후계자 교육훈련, 능력 개발이 가업승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종수(2009)는 우리나라 가업승계지원세제의 현황을 독일 및 영국의 가업승계지원세제를 비교하여 단기적으로 가업승계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물납을 허용할 것 등 가업상속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가업상속을 할 때 세제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완일(2010)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속개시 시점에서 가업상속주식 또는 가업상속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가업상속주식 또는 가업상속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업상속주식 또는 가업상속자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도입되고 이후 정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숙찬(2013)은 우리나라, 독일 및 일본의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과 가업승계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규모를 적정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독일 방식처럼 전폭적으로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도입하고 생존 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을 조정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후계자 요건을 강화하여 경영능력 등에서 일정 수준을 요구할 것과 가업승계기업의 승계 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재영과 김갑순(2017)은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상속인의 동시승계 요건, 상속인의 통제를 넘어서 사후관리 요건, 가업을 승계받을 후계자의 교육·육성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마련 및 운영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저조하다고 보

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업 소유권만 받고 경영권은 전문경영인에게 승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보충할 것과 가업승계 후 후계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개선, 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육성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공제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주장하였다.

한편, 실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의 파악이 어렵고 자료 수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후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주로 가족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포함되어 이루어졌다. 남영호와 문성주(2007)는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수익성, 생산성, 고용력 등에서 성과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상경과 이해영(2011)은 패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비가족기업의 경영성과보다 높음을 보고하였다. 박선영(2016)은 가족기업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정화와 고윤성(2009)은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하여 기업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가업승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황우연(2008)은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전·후의 성과비교 연구를 통하여 가업승계 후 투자가 활발해지고 동시에 차입도 증가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에서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미영과 이덕훈(2018)은 상장 제조 제약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를 초과수익률로 분석한 결과, 가업승계 이후 가족기업의 장기성과는 대체로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성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후계자에게 경영권 승계를 한 승계기업, 가업승계 준비기간이 긴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더 우수하며, 후계자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의 장기성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2018)은 가업승계 전·후와 승계방법에 따른 조절효과와 경영성과를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업승계 후 부담해야 하는 세제감소를 위하여 가업승계 전 주식가치 평가 시 주식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며, 가업승계 전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이익이 가업승계 후 정상 회복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확대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최은식(2020)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가업승계를 한 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대해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업승계기업은 가업미승계기업보다 이익을 하향조정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가업승계기업과 가업미승계기업의 조세회피 크기, 가업승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설정

본 연구는 실제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조

세회피 수준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운경(2011)은 가업승계기업에서 부동산의 장부가치와 평가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을 때 세법상 불리하며, 가업승계를 하기 전에 부동산과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승계시점의 과세부담을 예측하여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특히, 부동산 보유비중이 총자산대비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대한 높은 가중평균 적용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이 높아져 조세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총자산대비 50%를 초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가업승계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높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설립 시점 혹은 이후에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의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가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과 시가를 반영한 재평가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한다.⁶⁾ 가업승계 이전에는 기업의 자산은 장부금액, 부채는 담보 제공 부동산의 평가금액으로 이루어져 순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되다가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재평가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조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이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다.

- 5)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분	내 용
주당평가가치	$(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 / 5$
순자산가치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자율*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부동산 과다보유기업*	$(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2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3) / 5$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장부금액보다 재평가금액이 낮은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가설 1 :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은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가업승계 전에 조세부담이 높아져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유인이 높다. 하지만 가업승계 이후에는 이러한 조세회피의 유인이 없어지므로 정상적인 조세회피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가업승계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은 가업승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승계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표본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표본기업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외감법인을 선정하였으며,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에 필요한 기업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기업 중에서 2019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만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용된 기업-연도 수는 60개이며, 연도별 표본기업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표본기업 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가업승계기업수	24	8	10	10	4	4	60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분석 모형 1과 2를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인 조세회피 수준은 Desai and Dharmapala(2006, 2009)의 조세회피 추정치(TS)와 Hanlon

and Heitzman(2010)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를 이용하였다.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는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 이후는 1,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 이전이면 0으로 구분하였다.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⁷⁾는 가업승계 직전연도의 부동산 비율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이 중위수 이상인 기업은 1, 중위수 미만인 기업은 0으로 구분하였다. 만약,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보다 높다면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회귀계수인 β_2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의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 1-2에서는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MR*)를 포함하였다. 만약,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가업승계 후 조세회피 수준이 가업승계 전보다 낮아진다면 상호작용변수(*DFBS*×*MR*)의 회귀계수인 β_3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변수로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SIZE*), 영업활동현금흐름(*OCF*), 총자산순이익률(*ROA*), 부채비율(*LEV*), 매출액증가율(*GRW*), 전기순손실 더미변수(*LOSS*)를 모형에 포함하였고, 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D*)를 추가하였다.

$$TS(BTD)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 + \beta_3 SIZE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EV_{i,t} + \beta_7 GRW_{i,t} + \beta_8 LOSS_{i,t} + \beta_9 \sum YR_{i,t} + \varepsilon_{i,t} \quad [\text{모형 1}]$$

$$TS(BTD)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 + \beta_3 DFBS \times MR_{i,t} + \beta_4 SIZE_{i,t} + \beta_5 CFO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GRW_{i,t} + \beta_9 LOSS_{i,t} + \beta_{10} \sum YD_{i,t} + \varepsilon_{i,t} \quad [\text{모형 2}]$$

*TS*⁸⁾ : 조세회피 추정치(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

*BT**D*⁹⁾ : 조세회피 추정치(Hanlon and Heitzman 2010)

7) 원칙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보유 부동산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 총자산대비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해당하지만 표본 중 50% 초과하는 기업은 없었으므로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보다 높으면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 중위수보다 낮으면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8) $BT D = \beta_1 TA_t + \varepsilon_t$

*TA*_{*t*} : 총발생액/기초총자산

9) $BT D = Y^s - \widehat{Y^T}$

*BT**D*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Y^{*s*} : 재무보고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widehat{Y^T}$: 세무보고이익(법인세부담액/법인세율)

DFBS :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 이후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R : 기업의 가업승계 직전 연도의 부동산 보유 비율($((\text{건물} + \text{토지} + \text{투자부동산}) / \text{총자산})$)이 중위수 이상인 기업은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 : 기업 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순이익률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GRW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LOSS : 전기 순손실인 경우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YD : 연도더미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표 3> 기술통계량

Variables	Mean	Median	SD	MIN	MAX
<i>TS</i>	-0.010	-0.007	0.022	-0.106	0.020
<i>BTD</i>	-0.018	-0.012	0.052	-0.184	0.076
<i>DFBS</i>	0.500	0.500	0.504	0.000	1.000
<i>MR</i>	0.630	1.000	0.486	0.000	1.000
<i>SIZE</i>	10.704	10.695	0.503	9.958	12.122
<i>CFO</i>	0.073	0.083	0.095	-0.235	0.288
<i>ROA</i>	0.045	0.034	0.058	-0.102	0.183
<i>LEV</i>	0.514	0.487	0.236	0.098	0.983
<i>GRW</i>	0.247	0.076	1.064	-0.218	8.215
<i>LOSS</i>	0.167	0.000	0.376	0.000	1.000

주) 변수의 정의

TS : 조세회피 추정치(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

BTD : 조세회피 추정치(Hanlon and Heitzma 2010)

DFBS :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 이후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R : 기업의 가업승계 직전 연도의 부동산 보유 비율($((\text{건물} + \text{토지} + \text{투자부동산}) / \text{총자산})$)이 중위수 이상인 기업은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ROA : 총자산순이익률
LEV : 부채비율
GRW : 매출액증가율
LOSS : 전기 순손실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YD : 연도더미

조세회피 추정치(*TS*)의 평균(중위수)은 $-0.010(-0.007)$ 이고, 조세회피 추정치(*BTD*)의 평균(중위수)은 $-0.018(-0.012)$ 으로서 영(0)에 가까운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의 평균(중위수)은 $0.500(0.500)$ 이며,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평균(중위수)은 $0.633(1.000)$ 이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 영업활동현금흐름(*CFO*), 수익성(*ROA*)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10.704(10.695)$, $0.073(0.083)$, $0.045(0.034)$ 이며, 부채비율(*LEV*), 매출액증가율(*GRW*), 전기순손실 더미변수(*LOSS*)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514(0.487)$, $0.247(0.076)$, $0.167(0.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치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연속변수에 대하여 상하 1% 수준에서 winsorization하였다.

<표 4>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이다.

<표 4> 상관관계

	<i>TS</i>	<i>BTD</i>	<i>DFBS</i>	<i>MR</i>	<i>SIZE</i>	<i>CFO</i>	<i>ROA</i>	<i>LEV</i>	<i>GRW</i>
<i>TS</i>	1								
<i>BTD</i>	.367***	1							
<i>DFBS</i>	.030	.048	1						
<i>MR</i>	-.010	.248*	.001	1					
<i>SIZE</i>	.066	-.180	.031	-.211	1				
<i>CFO</i>	.242*	.346***	-.016	-.060	-.235	1			
<i>ROA</i>	.131	.042	.105	-.105	.079	.484***	1		
<i>LEV</i>	-.257**	.056	-.032	.044	-.313**	-.231*	-.478***	1	
<i>GRW</i>	.145	.091	-.089	-.204	-.184	.114	.024	.023	1
<i>LOSS</i>	.048	.315**	.179	.062	-.012	.008	-.230	.361***	-.088

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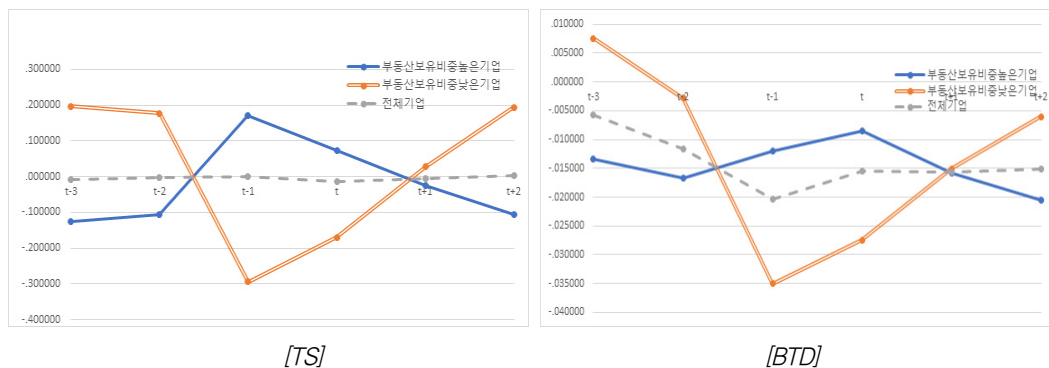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조세회피 추정치(*TS*)는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양(+)의 상관관계,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세회피 추

정치(BTD)는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수준(TS)은 영업활동현금흐름(CFO)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부채비율(LEV)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세회피 추정치(BTD)는 영업활동현금흐름(CFO)과 전기순손실 더미변수($LOSS$)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에 앞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전체 표본을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MR 이 1인 기업)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MR 이 0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조세회피수준(TS , BTD)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의 전기($t-1$ 기)에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TS , BTD)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t 기) 이후에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TS , BTD)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연도별 조세회피 수준



2. 회귀분석

<표 5>는 조세회피 추정치(TS)를 이용하여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 수준의 관계에 대한 가설 1과 가설2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 \times MR$)를 포함하기 전 모형이고, 모형 2는 상호작용변수($DFBS \times MR$)를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1의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형 2의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가업승계 이후 조세회피 수준에 대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가업승계 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MR*)의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로는 영업활동현금흐름(*CFO*)이 조세회피 수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채비율(*LEV*)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TS*)이 가업승계 전에 비하여 가업승계 후 낮아졌으며, 이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가업승계 전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조세회피 유인이 가업승계 후에는 감소함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T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S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SIZE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EV_{it} + \beta_7 GRW_{it} + \beta_8 LOSS_{it} + \beta_j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1]						
$TS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DFBS \times MR_{it} + \beta_4 SIZE_{it} + \beta_5 CFO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GRW_{it} + \beta_9 LOSS_{it} + \beta_j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2]						
Variables	<i>TS</i> [모형 1]			<i>TS</i> [모형 1-2]		
	<i>B</i>	<i>t-stat</i>	<i>p-value</i>	<i>B</i>	<i>t-stat</i>	<i>p-value</i>
<i>Intercept</i>	0.007	0.090	0.929	-0.033	-0.439	0.663
<i>DFBS</i>	0.003	0.475	0.637	0.016	1.722*	0.091
<i>MR</i>	0.009	1.450	0.154	0.022	2.790**	0.008
<i>DFBS</i> × <i>MR</i>				-0.029	-2.515**	0.015
<i>SIZE</i>	-0.001	-0.110	0.913	0.002	0.289	0.774
<i>CFO</i>	0.039	1.052	0.298	0.074	1.940*	0.058
<i>ROA</i>	-0.059	-0.901	0.372	-0.079	-1.264	0.212
<i>LEV</i>	-0.038	-2.333**	0.024	-0.034	-2.183**	0.034
<i>GRW</i>	0.029	1.774*	0.082	0.024	1.537	0.131
<i>LOSS</i>	0.015	1.667	0.102	0.013	1.557	0.126
<i>YD</i>	Included			Included		
<i>Adj-R²</i>	0.081			0.171		
<i>R² 변화량</i>	0.181			0.092		
<i>F</i>	1.624**			2.303***		

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은 조세회피 추정치(BTD)를 이용하여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계수는 각각 통계적으로 10%와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MR)의 계수는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BTD)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TD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SIZE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EV_{i,t} + \beta_7 GRW_{i,t} + \beta_8 LOSS_{i,t} + \beta_9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1]
$BTD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DFBS \times MR_{i,t} + \beta_4 SIZE_{i,t} + \beta_5 CFO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GRW_{i,t} + \beta_9 LOSS_{i,t} + \beta_{10}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2]
Variables	BTD[모형 1]			BTD[모형 2]		
	B	t-stat	p-value	B	t-stat	p-value
Intercept	0.112	0.631	0.531	0.072	0.395	0.694
DFBS	0.001	0.029	0.977	0.019	0.861	0.394
MR	0.027	1.850*	0.070	0.039	2.092**	0.042
DFBS×MR				-0.029	-1.050	0.299
SIZE	-0.015	-0.955	0.344	-0.012	-0.775	0.442
CFO	0.155	1.828*	0.074	0.189	2.085**	0.042
ROA	0.028	0.193	0.848	0.008	0.056	0.955
LEV	-0.007	-0.198	0.844	-0.003	-0.088	0.930
GRW	-0.026	-0.681	0.499	-0.031	-0.808	0.423
LOSS	0.050	2.500**	0.016	0.048	2.414***	0.020
YD	Included			Included		
Adj-R ²	0.184			0.186		
R ² 변화량	0.263			0.016		
F	2.612***			2.449***		

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추가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정합성이 높고 조세회피 수준이 이익조정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분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 3과 모형 4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익조정 수준은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의 재량적 발생액(DA)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Kotari et al., 2005)을 이용하여 성과(ROA)가 통제된 상태에서 추정한 재량적 발생액(ROADA)을 이용하였다. 모형 3은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MR)를 포함하기 전 모형이고, 모형 4는 상호작용변수(DFBS×MR)를 포함한 모형이다.

$$DA(ROADA)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 + \beta_3 SIZE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EV_{i,t} \\ + \beta_7 GRW_{i,t} + \beta_8 LOSS_{i,t} + \beta_j \sum YR_{i,t} + \varepsilon_{i,t} \quad [\text{모형 3}]$$

$$DA(ROADA)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 + \beta_3 DFBS \times MR_{i,t} + \beta_4 SIZE_{i,t} + \beta_5 CFO_{i,t} \\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GRW_{i,t} + \beta_9 LOSS_{i,t} + \beta_j \sum YD_{i,t} + \varepsilon_{i,t} \quad [\text{모형 4}]$$

DA¹⁰⁾ : 수정 Jone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Dechow et al. 1995)

ROADA¹¹⁾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ari et al. 2005)

DFBS :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연도 이후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R : 기업의 부동산 비율((건물+토지+투자부동산)/총자산)이 중간값 이상인 기업은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순이익률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GRW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LOSS : 전기순손실 더미변수, 전기 순손실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YD : 연도더미

$$10) TA_t / A_{t-1} = \beta_1 (I/A_{t-1}) + \beta_2 ([\Delta REV_t - \Delta REC_t] / A_{t-1}) + \beta_3 (PPE_t / A_{t-1}) + \varepsilon_t$$

TA_t : t기 NI(당기순이익)-CFO(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A_{t-1} : t기 기초총자산

ΔREV_t : t기 매출액의 변화분

ΔREC_t : t기 매출채권의 변화분

PPE_t : t기 유형자산(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

ε_t : 잔차항

$$11) TA_t / A_{t-1} = \beta_1 (I/A_{t-1}) + \beta_2 ([\Delta REV_t - \Delta REC_t] / A_{t-1}) + \beta_3 (PPE_t / A_{t-1}) + \beta_4 ROA_t + \varepsilon_t$$

ROA_t : t기 총자산순이익률

<표 7>은 재량적 발생액(DA)을 이용하여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2-1과 모형 2-2의 분석 결과,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의 계수는 모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 × MR)의 계수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DA)이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이 조세회피 수준이 높고 승계 후에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이익조정과는 무관하며, 예측했던 바와 같이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가업승계 전에 높아진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DA)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DA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SIZE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EV_{i,t} + \beta_7 GRW_{i,t} + \beta_8 LOSS_{i,t} + \beta_j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3]						
$DA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DFBS \times MR_{i,t} + \beta_4 SIZE_{i,t} + \beta_5 CFO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GRW_{i,t} + \beta_9 LOSS_{i,t} + \beta_j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4]						
Variables	DA[모형 3]			DA[모형 4]		
	B	t-stat	p-value	B	t-stat	p-value
Intercept	6.078	1.855*	0.070	6.982	2.096**	0.041
DFBS	-0.036	-0.145	0.885	-0.457	-1.119	0.269
MR	-0.052	-0.197	0.845	-0.338	-0.982	0.331
DFBS × MR				0.645	1.285	0.205
SIZE	-0.479	-1.631	0.109	-0.539	-1.826*	0.074
CFO	-6.543	-4.191***	0.000	-7.313	-4.398***	0.000
ROA	3.725	1.367	0.178	4.176	1.530	0.133
LEV	-1.192	-1.760*	0.085	-1.282	-1.895*	0.064
GRW	-0.327	-0.472	0.639	-0.214	-0.309	0.758
LOSS	-0.037	-0.103	0.919	-0.002	-0.004	0.997
YD	Included			Included		
Adj-R ²	0.217			0.227		
R ² 변화량	0.306			0.022		
F	2.974***			2.862***		

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8>은 성과대응 채량적 발생액(*ROADA*)을 이용하여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이며, <표 6>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모형 2-1과 모형 2-2의 분석 결과,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의 계수는 모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업승계후 더미변수(*DFBS*)와 부동산 보유비중 더미변수(*MR*)의 상호작용변수(*DFBS*×*MR*)의 계수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ROADA*)이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다는 강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8>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ROADA*)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ROADA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SIZE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EV_{i,t} + \beta_7 GRW_{i,t} + \beta_8 LOSS_{i,t} + \beta_9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3]						
$ROADA_{i,t} = \beta_0 + \beta_1 DFBS_{i,t} + \beta_2 MR_{i,t-1} + \beta_3 DFBS \times MR_{i,t} + \beta_4 SIZE_{i,t} + \beta_5 CFO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GRW_{i,t} + \beta_9 LOSS_{i,t} + \beta_{10} \sum YD_{i,t} + \varepsilon_{i,t}$						
[모형 4]						
Variables	<i>ROADA</i> [모형 3]			<i>ROADA</i> [모형 4]		
	B	t-stat	p-value	B	t-stat	p-value
Intercept	5.925	1.821 *	0.075	6.783	2.048 **	0.046
<i>DFBS</i>	-0.019	-0.080	0.936	-0.420	-1.034	0.307
<i>MR</i>	-0.057	-0.218	0.828	-0.328	-0.960	0.342
<i>DFBS</i> × <i>MR</i>				0.612	1.227	0.226
<i>SIZE</i>	-0.465	-1.597	0.117	-0.523	-1.781	0.081
<i>CFO</i>	-6.523	-4.208 ***	0.000	-7.254	-4.388 ***	0.000
<i>ROA</i>	3.494	1.291	0.203	3.922	1.445	0.155
<i>LEV</i>	-1.154	-1.717 *	0.092	-1.240	-1.844 *	0.071
<i>GRW</i>	-0.330	-0.480	0.633	-0.224	-0.325	0.747
<i>LOSS</i>	-0.060	-0.167	0.868	-0.026	-0.073	0.942
<i>YD</i>	Included			Included		
<i>Adj-R</i> ²	0.220			0.228		
<i>R</i> ² 변화량	0.308			0.020		
F	3.004 ***			2.865 ***		

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V. 결 론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은 원활한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로 인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유동성 확보를 위한 현금 유출 및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납세재원이 부족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동산 보유비중에 관심을 가지고 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이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승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가업승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지고, 승계 후에는 이러한 조세회피의 유인이 없어져 정상적인 조세회피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과 과소보유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과다보유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은 가업승계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이익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가업승계를 한 뒤 사후관리 중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가업승계로 인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영자 및 정책입안자, 과세당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 9-40.
- 고윤성 · 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49-76.
- 국세청. 2021.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 김선화 · 남영호. 2013. “가족기업의 승계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 경영자와 후계자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 1337-1359.
- 김완일. 2010.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 399-430.
- 김유경. 2018. “가업승계와 경영성과간의 관련성-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형중 · 박성욱 · 송혁준. 2014.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2호 : 89-107.
- 남영호 · 문성주. 2007. “가족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코스닥 등록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1호. 237-264.
- 박권수 · 홍기용. 2013. “기업특성을 반영한 가업승계세제의 차별적 적용”. 국제회계연구 제52권 : 233-264.
- 박상경 · 이해영. 2011. “가족기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로부터의 근거”. 생산성논집 제25권 제3호 : 262-282.
- 박선영. 2016. “기업의 과잉투자사결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족지배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169-188.
- 박종수. 2009.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 45-82.
- 세정일보. 2021년 7월 8일
- 안숙찬. 2013.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12호 : 3189-3210.
- 양재영 · 김갑순. 2017.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4권 제4호 : 111-137.
- 이미영 · 이덕훈. 2018.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 93-121.
- 이정화 · 고윤성. 2009. “가족기업과 기업성과”.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1호 : 59-90.
- 이현재. 2009. “승계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가업승계 원활화 전략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운경. 2011. “부동산 과다보유가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최은식. 2020.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및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외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보영 · 정규언. 2016. “기업의 위험성향과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2호 : 317-341.

황우연. 2008.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요인과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 193-225.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Desai, M., and D. Dharmapala.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 537-546.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27-178.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 163-197.

A Study on the Tax Avoid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 Focusing on Real Estate Ratio -

Yoon, You-Jin* · Lee, Hyun-Ah**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in their asset.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succession of these firms.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the net asset value is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revaluation of real estate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a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ir tax burden. Thus, we expect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tween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and firms with a low ratio of real estate.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succession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because their incentives of tax avoidance decrease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e test our hypotheses using a sample of 60 firm-year observations of external audit firms whos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ok place from 2010 to 2015 and whose follow-up management is in progress as of 2019.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have a higher level of tax avoidance than firms with a low ratio of real estate. Second,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the level of tax avoidance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lower than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for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level between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and firms with a low ratio of real estate. It is also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for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before and aft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is confirms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firms with a high ratio of real estate is affected by the increased tax burden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s predicted, rather than by the earnings management.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 Taxation, Gachon University, CTA, yoonyou@hanmail.net,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Gachon University, halee@gachon.ac.kr, Corresponding Author

This study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finding that the real estate ratio is associated with the tax burde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mpanies, which affects their tax avoidance related decision-making. For firms wi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plans, the tax burden is a critical issue because it can lead to cash outflow and productivity decline to secure the liquidity for tax paymen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various stakeholders who are interested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Key words〉 Real Estate Ratio, Family Business, Business Succession, Tax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